

개정 전	개정 후
<p><u>025년 12월 31일</u>”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② ----- ----- -----<u>2028년 12월 31</u> <u>일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생략)